

교통법규위반차량권고엽서제운영

1. 기본목표

- 가. 불법, 난폭운전자에 대한 계도를 통하여 불법운전을 자제하고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하여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 나. 또한 신고요원 본인에게는 스스로 준법,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2. 시행방향

- 가. 신고대상은 모든 차량의 법규위반 행위(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상)로 한다.
- 나. 신고요원은 건설교통부 직원, 건설교통부 산하기관, 단체직원 및 각 시·도 공무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 다.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① 단순위반행위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명의의 준법운전 권고엽서 발송
 - ② 중대한 위반 및 상습위반자는 고발 조치

3. 신고 및 처리절차등

- 가.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신고요원은 타차량의 불법운전 사례 적발
 - ② 위반차량의 번호, 일시 및 장소, 위반내용을 소정양식에 기재하여 전담부서(건설교통부 본부는 교통안전과, 산하기관 및 단체는 교통안전공단, 시·도 및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는 각 시·도의 교통안전담당부서)로 제출
- ※ 개인별 신고요령 : 신고서에 의함(별지1)

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신고된 내용은 대장에 기록하고 자동차관리 담당부서에 차적조회(소유자 성명, 주소)
- ② 자동차관리 담당부서는 당일로 차적을 확인, 전담부서에 통보
- ③ 전담부서는 통보자의 처리 구분(고발 또는 권고)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위반자에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명의의 권고엽서(별지2) 발송

다. 시·도 및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매분기 권고엽서 발송 및 고발실적을 집계하여 분기말 익월 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별지3)

4. 시행일등

가. 이 지침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시달된 교통법규위반차량권고엽서제운영(지시)에 관한 지시·지침(건설교통부 교통안전국 업무처리 통합지침서[1995.8.31])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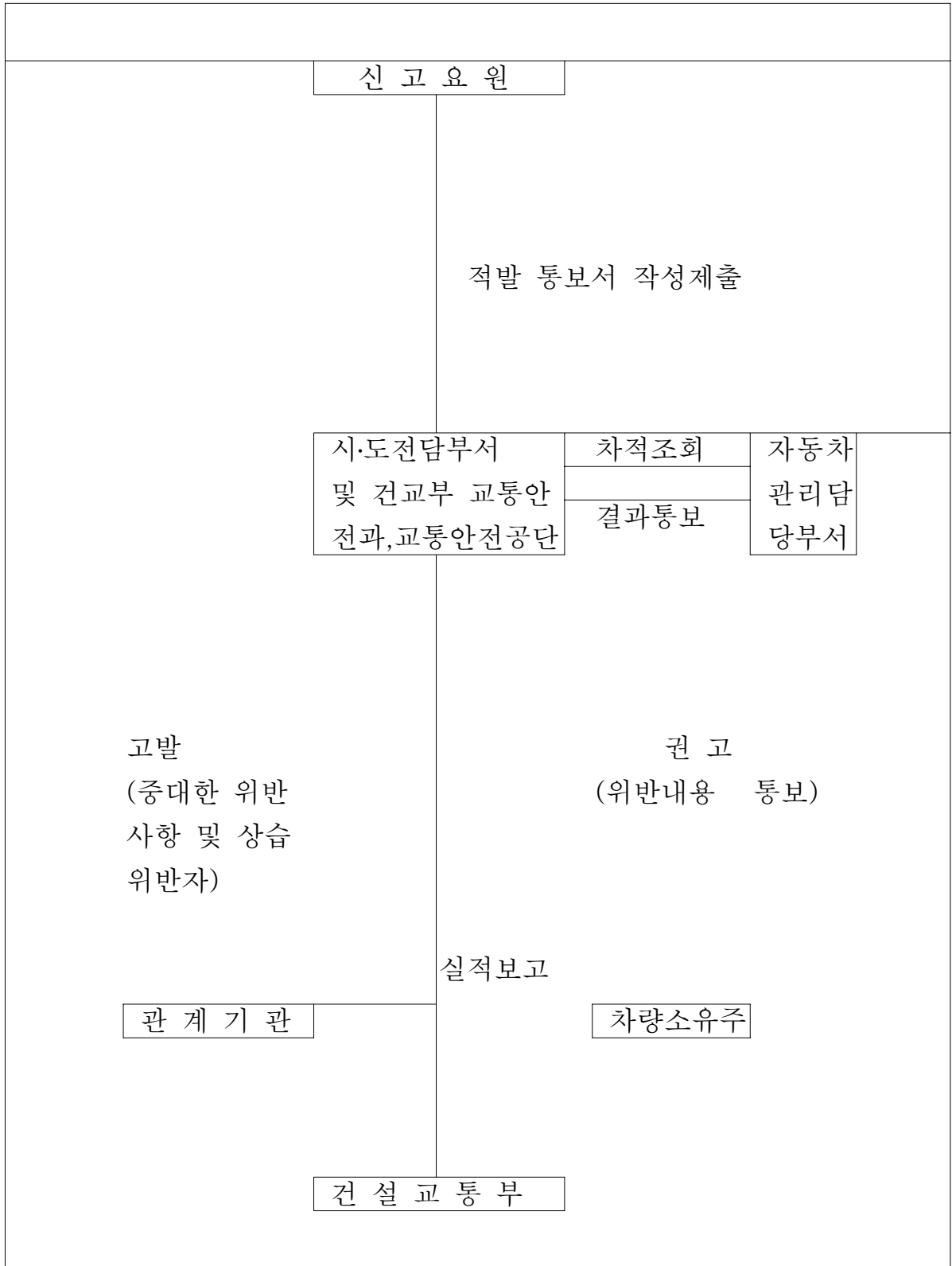
[별표 1]

○ 신고내용

위 반 내 용	근 거
<p>○ 도로교통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호 위반 2. 중앙선 침범 3. 버스전용차선 통행 위반 4. 과속운전(제한속도 위반) 5. 횡단, 회전, 후진 위반 6. 앞지르기 금지위반 7. 서행, 일시정지 위반 8. 정차 및 주차위반 9. 제차의 신호 불이행 	<p>도로교통법</p> <p>제5조</p> <p>제12조제3항</p> <p>제13조의2제2항</p> <p>제15조제3항</p> <p>제16조</p> <p>제20조제1항내지제3항</p> <p>제27조제1항, 제27조의2</p> <p>제28조내지제30조</p> <p>제33조제1항</p>
<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문발차 	<p>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p> <p>제28조</p>
<p>○ 자동차관리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번호표 식별곤란 2. 불법부착물 장식 3. 등화시설 불비 	<p>자동차관리법</p> <p>제24조</p> <p>제24조</p> <p>제29조</p>

[별표 2]

○신고 및 처리도



[별지 1]

(앞면)

교통관련 법규위반 신고서

차량번호		차량구분		
위반일시		처리구분	고발	권고
위반장소				
위반내용 (해당사항에○표)	도로교통법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버스전용차선 통행위반 4. 과속운전 5. 횡단·회전·후진 위반 6. 앞지르기 금지위반 7. 서행·일시정지 위반 8. 정차 및 주차위반 9. 제차의 신호 불이행 등		
	여객자동차운 수사업법	1. 개문발차 등		
	자동차관리법	1. 번호표 식별곤란 2. 불법부착물 장식 3. 등화시설 불비 등		
위반사실 구체적기재				
소 속 : (또는 주소)				
직 급 :				
성 명 : (인)				

(뒷면)

안 내 말 씀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바람직한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운전습관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건전한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관련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보았을 때에는 이 신고서 또는 아래 전화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시·도담당부서	교통안전공단	지역	시·도담당부서	교통안전공단
서울	3707-9811	683-5000	강원	52-5000	261-5000
		309-5000			
부산	888-5000	315-5000	충북	52-5000	69-5000
대구	254-5000	565-5000	충남	220-3323	53-5000
인천	427-0094	833-5000	전북	85-5000	213-5000
광주	224-5000	675-5000	전남	232-9128	676-5000
대전	250-2345	522-5000	경북	950-3999	791-5000
울산	273-0101	315-5000	경남	84-5000	73-5000
경기	249-4811	221-5000	제주	46-4267	21-5000

[별지 2]

(앞면)

우 편 엽 서
(교통법규 준수 권고용)

우 표
=====

보내는사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내
건설교통부장관
전화 02)504-9151

받는사람

□□□ - □□□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예시사항임(시·도는 시·도의 주소 기재)

(뒷면)

알 리 는 말 씀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바람직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차량번호) 년 월 일 시에 에서 법(조 항)을 위반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질서와 양보를 먼저 생각하는 여유있는 운전습관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도 교통사고 발생현황.

·총발생건수 : 건(1일 건)

·사망자 수 : 명(1일 명)

년 월 일